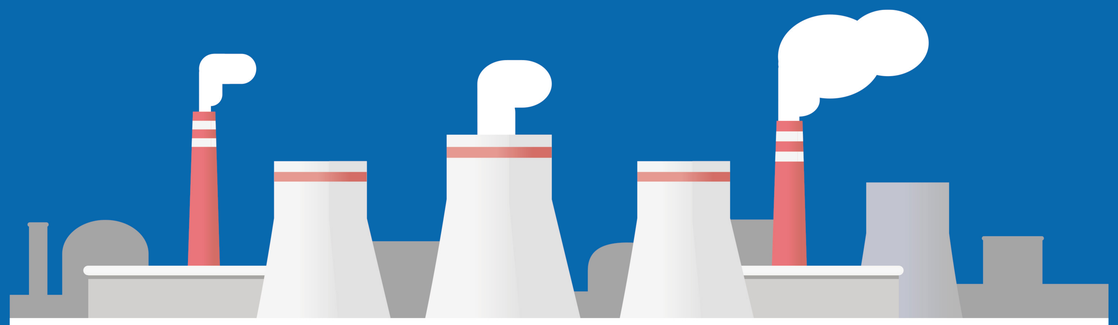

대기배출원조사 FAQ

자주하는 질문

Q1 | 대기배출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?

대기배출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다양한 대기 환경정책 수립·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. 사업장 기본부과금 산정 등 유관기관의 기초자료로 제공됩니다.

Q2 | 대기배출원조사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?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90조(벌칙), 제94조(과태료)에 의거하여 각 시군구 소속의 담당자가 경중을 판단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.

Q3 | 4·5종 대기 사업장의 경우도 SEMS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나요?

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6조에 따라서 4종 또는 5종 사업장은 "SEMS에 입력" 또는 "지자체·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제출" 중 선택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

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

주소 (28166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06 백천빌딩 4~6층
대표번호 043-279-4500 **홈페이지** https://www.air.go.kr

대기배출원조사란 무엇일까?

대기배출원조사란?

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대기배출사업장의
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관련 시설현황, 운전사항,
자가측정 정보 등 약 150여개 항목을 수집 하는 조사

법적근거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7조(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조사)

조사 대상

대기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를 받은 모든 사업장이 대기배출원조사 대상에 포함

1~3종 사업장	약 4,500개
4~5종 사업장	약 55,000개

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

1~3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조사

환경기술인이 직접
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(SEMS)에
입력한 사업장의 일반현황, 시설정보,
자가측정결과, 사용량 정보를
바탕으로 배출원을 조사

기록보존

주체 대기배출사업장

1~3종 대기배출사업장 기초자료 등록

사업장 현황	시설 현황	가동 시간
운전 사항	자가측정 사항	사용량

1~3종 대기배출원조사 절차

주체 정부 및 지자체

입력 자료 검증

1차검증	사업장에서 입력 이후 누락된 값을 검증 프로그램으로 확인
2차검증	전문 상담가를 통한오류값 재수정
3차검증	연료사용량, 소각량 등과 같은 활동도 값을 통계로 검토

→ **배출원조사 자료확정** → **자료제공**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

4·5종 대기배출사업장 배출원조사

4, 5종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이
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(SEMS)을 이용하거나,
지자체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직접 제출

4,5종 대기배출원 조사절차

지자체	사업장목록, 인허가증,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
조사대상사업장	사업장 운영현황(가동시간, 연료사용량 등)
대기배출원조사표	**2024. 1. 1. ~12. 31. 사용한 기록을 작성(운영기록부 참조)**

⇄ 환경부 미세먼지정보센터 **수집자료 전산화**

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(SEMS)이란?

허가 및 신고 사항의 준수여부를
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가
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
운영기록 및 자가측정 사항을
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는
시스템

사업장

사업장 현황정보	방지시설 운전사항
환경 기술인정보	시설 보수사항
시설현황	자가측정 배출량 정보
배출시설 가동시간	연료사용량등 활동도정보

자료 등록 →

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(SEMS)

대기 1~3종 사업장	**등록의무대상**
대기 4·5종 사업장	**등록선택대상**

1~5종 대기배출사업장 자료 기록·보존

1~5종 대기배출원조사 수행

지자체 관할사업장 관리
(지도 점검, 기본 부과금 제출, 배출량 조회 등)

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

← **정보 관리**

지자체 담당자

대상사업장 관리

사업장 등록정보조회 (지도점검)

사업장 정보 통계조회